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 2. 5(월) 총 3매(본문 3)	
담당 부서 녹색도시과	담당 자	· 과장 김명준, 사무관 심인보, 주무관 김기환 · ☎ (044) 201-3745, 3746	
보 도 일 시		2018년 2월 6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6(화) 08:00 이후 보도 가능	

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, 국무회의 의결

-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등 관리강화,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등 허용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,

- 전기차 충전시설,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(2.6)함에 따라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□ 금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- 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강화 (시행령 제24조의2, 시행령 별표1 제5호 등)
- (관리공무원 배치)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을,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km²당 1명 이상,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km²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*하도록 하였다.

*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('17.8.9)에 따라, 금번에 세부내용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 구체화

** 관리공무원 배치 규정은 현재 국토부 훈령(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규정)에 규정되어 있으나, 법령으로 상향규정하여 관리공무원 배치 강화

- (시·도지사의 관리권한 강화) '17.8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금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시·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,
 - 또한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(집행명령)할 수 있게 되었음
 - 이와 관련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·군·구에는 축사의 설치가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.



②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시설 등의 입지허용 (시행령 별표1 제2호, 제3호)

- (전기차 충전시설 허용)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 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가 허용되고,
 - *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,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기허용
- (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허용)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.

③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 (시행령 별표1 제3호)

- 그 외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되고,
-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류창고 높이를 완화(8m→10m)하고,
 -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였다.

- 한편, 국토부는 작년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이 시행(17.12.30)되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,
 - 경기도 등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간담회(1.24)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*하였으며,
 - *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와 관련한 업무처리요령도 함께 전달
 - 관리공무원 배치 확대,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(시도지사의) 행위허가 제한조치나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명령 적극 검토 등을 통해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.
 - 아울러,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시설 입지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, 법령개정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.

 <small>공공누리 영문지정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 <small>국토교통부</small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심인보 사무관(☎ 044-201-374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-	---